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422호(號) 1931(昭和 6)년 9월 30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69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중(中) 1931(昭和 6)년 10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9월 30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기사란(記事欄) 중(中) 「본(本) 운임(運賃)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10조(條)제4호(號) 적용상(適用上) 보통임률(普通賃率)로 간주(看做)함」을 「본(本) 운임(運賃)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10조(條)제3호(號) 적용상(適用上) 보통임률(普通賃率)로 간주(看做)함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국선(局線)과 내지(內地) 간(間) 발착(發著: 부산경유[釜山經由])의 부문[部] 중(中) 도기류(陶器類: 화로[火鉢]를 포함[包含]함)의 항(項) 기사란(記事欄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본(本) 임률(賃率)에는 접속비(接續費)를 포함(包含)함.

내지(內地)와 만주(滿洲) 간(間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면사(綿糸)의 항(項) 및 면직물(綿織物)의 항(項) 기사란(記事欄) 중(中) 제3호(號)를 삭제(削除)함.